

사전컨설팅 · 적극행정 면책 제도

1. 사전컨설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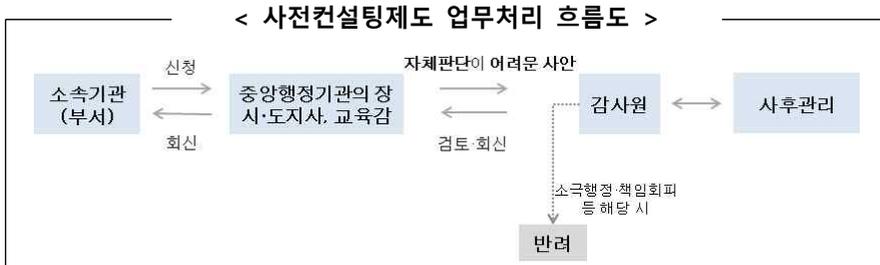
- (개념) 공직자가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, 해당부서가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

(근거)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의3
 「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5조
 「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」 제43조~제47조

- (신청)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·부서의 사전컨설팅 신청 시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거나,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신청

-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,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답변

(예외 :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필요 시 연장가능)



※ 법령이 명확한데도 단순 민원해소 목적 등 소극행정·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거나 충분한 자체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은 반려

- (효과) 감사기구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

- 다만 사안이 동일,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제공,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

2. 적극행정 면책

- (개념)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·감경해주는 제도

(근거) 「감사원법」 제34조의3
 「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5조 및 제6조
 「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」 제39조~제42조

- (절차) 수감자가 감사반장에게 면책신청, 심의회를 통해 면책요건 충족 여부 검토, 면책 결정 시 면책신청자에게 공문 통보



- (효과)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거나 책임을 경감

< 참고 :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사전컨설팅 제도 >

- (개요) 시도지사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구하고,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면제
- (근거)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(국무총리 훈령)
- (대상업무) 적극행정 지원사무, 법령등 해석사무
 - 인·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
 - 규제 관련 법령등이 불명확하여 해석·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
- (신청절차) 시도 감사 부서 → 행안부 감사부서에 신청 →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즉시 이송
 -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전컨설팅감사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사무가 불분명한 경우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거나, 행안부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음
 - * 시도에서 중앙행정기관에게 직접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은 즉시 행안부에 신청사실을 통보
- (처리절차)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(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)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실시 → 시도와 행안부에 감사 결과 통보
 - * 법령 해석만을 요청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내 해당 부서에서 처리
- (효력) 중앙행정기관의장이 통보한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「지방자치법」 제167조,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를 면제